

미국의 군복무 관련 질환의 보상에 관한 연구

김태열*

*영남이공대학 보건과학계열

e-mail:ktypv @naver.com

A Study on The Compensation about Diseases Related Militar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Tae-Yeol Kim *

*Dept of Health Science, YeungNam Technology Science College

요약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에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터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생활에서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있게 논의된 바 없는 것은 크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국가유공자 보상의 역사는 1950년 군사원호법을 시작으로 1951년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두

법률은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으로 통합하여 전쟁희생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 되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1980년대에는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80년대에는 고엽제 후유의증호소자, 참전·제대군인,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광주민주화관련자와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법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왔다(전광석 2004).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환이었다(Annu Rev Public Health 1994;15:69-90). 미국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한 질환을 담당하는 곳이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 보훈부는 본부,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VHA),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VBA),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NCA)으로 구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999).

미국은 오래전부터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대해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하면 미 보훈부 환경역학이나 국립과학아카데미 소속의 의학 연구원에서 Cohort Research 및 역학 조사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군복무와 관련된 의심되는 질환이 발병하면 국회, 연방정부, 법원, 언론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인정받기 힘들고 특히 입증 책임의 문제를 피해 당사자가 인과 관계를 밝혀야하고 소송을 하려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보상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크게 연구

된바 없는 미국 등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역사 및 직접질환, 추정질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병 보상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고엽제 질병장애등급 판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환자의 의료·복지향상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2.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주요 질환 보상 역사

2.1. 미국의 질병보상 절차

미 보훈부는 1930년 설립되어 군복무와 관련된 재해, 질병, 사망 및 군복무와 무관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보훈부 보상(Veterans' compensation) 절차를 파악해 보면, 퇴역군인은 자신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훈부 지역사무소에 보상을 신청한다. 지역사무소는 군대를 갔으며, 불명에 제대를 하지 않아 적격자인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보훈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진단과 의견을 제시하여 판정을 하게 된다(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0).

2.2. 일차세계대전과 머스타드 가스

(sulfur and nitrogen mustard, Lewsite)

머스타드 가스는 1917년 독일군이 영국군을 상대로 처음 사용하였다. 1차 세계대전에서 미 원정군은 약 28,000명이 독가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2차 세계대전에 머스타드가스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은 생산하여 만일의 상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미국은 자원을 대상으로 보호복, 보호크림 등에 대하여 비밀리에 인체 시험을 실시하였다(임현술 2001). 의학연구원은 1993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1941년부터 1975년까지 6만명이 독가스에 대한 인간 시험군으로 사용되었고 4천명은 고농도의 독가스에 폭로되었다. 1933년부터 독가스에 의하여 만성 건강장해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미국에서 독가스 시험에 동원된 군인에 대하여 추구조사나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주지 않았다. 미국에서 독가스의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대부분 유럽 논문을 검토하여 독가스 폭로에 의한 보상 질환을 결정한다(National Academy Press; 1993).

2.3. 이차세계대전과 핵실험

1977년 3월 핵실험이 끝난지 15년이 지나 아이

다호 주 Boise에 있는 보훈부 지역사무소에 퇴역군인인 Sergeant Cooper가 자신의 급성 백혈병이 과거 군복무시 핵실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장애 보상에 대한 청구를 접수한다. 과거 핵실험시 과학자를 포함한 시민들은 군인과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를 경고하였다. 이러한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국민을 설득한 정부는 당황한다. 보훈부는 Cooper의 청구를 심사하여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기각하였고, Cooper는 텔레비전 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과거 군대 시절에 참가한 핵실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때부터 핵실험에 참가한 군인들에 관한 건강장해는 미국 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백악관, 국회, 연방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대학들이 단독 또는 협동하여 저선량 방사선 폭로와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다 (National Academy press; 1990). 국회는 각종 청문회를 통하여 핵실험에 의하여 발생한 건강장해를 파악 1988년 5월 20일 공법 100-321인 "Radiation-Exposed Veterans Compensation Act of 1988"를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특정 질병 중 한 가지를 가지면 폭로 용량과 무관하게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Washington DC: DNA 6041F; 1996).

2.4.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발생 유형 분석

전쟁유형별 질병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베트남전이 정신신경질환 및 내외과계 질환을 포함해 735,6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화시 560,567명, 2차 세계대전 541,225명, 걸프전 282,140명, 한국전쟁 174,807명이었다<Table 1>.

[Table 1]. Type of major disability by period of service, September 30, 1999 (compensation)

Period of service	Psychiatric and neurological diseases	General medicine and surgical conditions	Total
World War I	19	68	87
World War II	120,642	420,583	541,225
Koren Conflict	31,948	142,859	174,807
Vietnam era	175,704	559,923	735,627
Gulf War	36,360	245,780	282,140
Peacetime	80,846	479,721	560,567
All periods	445,519	1,848,934	2,294,453

3. 미국의 질병 장애보상 (Diseases Disability Compensation)

3.1 군복무 관련질환 (Direct Diseases Related Military Service)보상

미국의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직접적인 질환을 살펴보면 질병에 대하여 불명예 제대를 하지 않고 10%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평생동안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만성병은 대부분 10% 이상 장애에 포함된다. 10%부터 100%까지 10등급의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불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추가된다(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0)<Table 2>.

3.2. 군복무와 관련한 추정질환(Presumptive Disease Related Military Service)보상

만성질환, 고엽제 관련질환 등은 군복무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퇴역 후 일정기간내 발생하여도 군복무 관련질환으로 추정하여 장애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9).

3.2.1. 만성병 (Chronic Diseases)

고혈압, 당뇨, 위궤양, 관절염 등의 여러 만성 질환이 퇴역 1년 안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10% 이상 장애가 생기면 보상된다. 나병과 결핵은 3년 이내, multiple sclerosis는 7년 이내에 발생하면 보상이 된다<Table 3>.

[Table 2] Direct Disease Connection Military Service

No	Disease	Disability Level
1	Hypertension	10% over
2	Diabetes Mellitus	
3	Anemia	
4	Arteriosclerosis	
5	Arthritis	
6	Cerebral hemorrhage	
7	Cerebral infarction	
8	Bronchiectasis	
9	Calculus	
10	Liver sclerosis	
11	Nephritis	
12	Leprosy	
13	Carcinoma	
14	Psychosis	
15	Neurosis	
16	Active tuberculosis	
17	Stomach ulcer	
18	Suicide	
19	Smoking	
20	Alcohol drink	

[Table 3] Chronic Diseases

No	Disease	Compensation Period
1	Hypertension	within 1 year
2	Diabetes Mellitus	1
3	Stomach ulcer	1
4	Arthritis	1
5	Leprosy	3
6	Tuberculosis	3
7	Multiple sclerosis	7

3.2.2 고엽제 질환(Agent Orange Diseases)

고엽제에 관한 추정 질환으로 베트남 참전 또는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복무한 경우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질환으로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호지킨병, 비호지킨림프종, 만

발성피부호르피린증(추정기간 1년), 전립선암, 호흡계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과 관련질환(추정기간 1년), 급성말초신경병(추정기간 1년) 으로 분류하고 있다<Table 4>.

[Table 4] Agent Orange Diseases

No	Diseases	period(year)
1.	NIDDM	
2.	Hodgkin's Disease	
3.	Non-Hodgkin's lymphoma	
4.	Porphyria Cutanea Tarda	1
5.	Prostate Carcinoma	
6.	Respiratory Carcinoma	
7.	Soft-Tissue Sarcoma	
8.	Chloracne or related disease	1
9.	Acute peripheral Neuropathy	1

4. 논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하여 외상이 아닌 질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상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뇌출혈, 뇌경색, 기관지 확장증, 결석, 간경화, 심장염, 간질, 나병, 암,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소음성 난청도 생기면 평생 보상을 받는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그 외 선진국의 군복무 질환에 대한 보상질환을 살펴보면 호주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호주의 인정 준칙에 의거하는데 군복무와 상해, 질병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확립에 사용하며, 보훈의료위원회(veterans Medical Authority)에서 인정준칙을 제정한다. 2005-2006년 호주 보훈부에서 인정한 40,000건중 군복무와 관련 질환을 분석해 본 결과 감각 신경성 난청과 변형성 관절증이 9%로 가장 많았고 이명증, 일광각화증, 요추척추증 6%, 피부의 비흑색 악성 신생물 5%, 허혈성 심장질환 4%, 후천성 백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혈압은 3%로 분석되었다(International Workshop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06. 8.)

국제 보훈워크샵 자료(2006)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제대군인의 질병보상에 관한 판정의 대표적인 질환을 분석해보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자살, 선천성질환 즉 남포성염유증, 다운증후군, 색맹, 혈우병 등이고 둘째 후천성질환 풍진, 난청, 심장병, 태아알콜증후군, 우울증, 장염질환 등 셋째 척추측만증, 편평족 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한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강구 방안으로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군복무와 관련한 정부차원에서 질병의 역학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지원 법률을 개정하여 단순한 의료비 감면이 아닌 일반 만성 질환 및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의 군복무 추정질환의 경우 크게 만성병, 고엽제 질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만성질환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 위궤양, 관절염 등의 여러 만성 질환이 퇴역 1년 안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10% 이상 장애가 생기면 보상된다. 나병과 결핵은 3년 이내, 다발성 경화증은 7년 이내에 발생하면 보상이 된다 둘째, 고

업제에 관한 추정 질환으로 9개 질환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국가보훈처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09. 3.31일 현재 후유증 질환은 총 14개 질환 30,353명 후유의증 질환 총 20개 질환 81,867명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후유증의 경우 6급 및 경상이자가 50%를 넘어 이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너무 낮은 현실이다. 그리고 후유의증 질환의 경우 장애 등급 판정시 법률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과민성피부염, 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두드러기, 습진은 중등도 경도는 인정하고 있으나 고도 자체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강구방안이 제기된다. 그리고 악성종양은 중등도가 법률상 구분이 없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고도, 중등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일광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이 50%이상자를 고도장애 등급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특히 악성종양경우 TNM-Stage 1-4 grade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합리적인 등급판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외상 장애에 대해서는 상이등급표에 의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 왔으나 질병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에 비해 너무나 인색한 현실이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군복무 관련 질환에 대한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질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외문헌>

1.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Fiscal Year Washington DC: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999
2.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oard of Veterans' Appeals. Unders tandingthe Appeal

- Proces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Affairs;2000.
3.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Federal Benefits for Veterans Dependen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0.
4.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8 Pensions, Bonuses, and Veterans' Relief.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9.
5. Bullman TA, Kang HK. The effects of mustard gas, ionizing radiation, herbicides, trauma, and oil smoke on US military personnel: The results of Veteran Studies. Annu Rev Public Health 15, 69-90, 1994.
6. Pechura CM, Rall DP. Veterans at risk the health effects of mustard gas and lewisit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3.
7. Committee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s, Board on Radiation Effects Research, Commission on Life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Health Effects of Expos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0.
8. Defense Nuclear Agency. For the record A History of the Nuclear Test personnel Review program,1978-1993. Washington DC: DNA 6041F; 1996.

<국내문헌>

1. 전광석, 국가유공자 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pp. 1-7, 2004.
2. 임현술. 미국 퇴역군인과 건강장해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역학회지, 제23권, 제1호, pp. 23-35, 2001.
3. 국제보훈 워크샵. 국가보훈처, 서울 2006.8
4. 국가보훈처, 내부 통계자료 2009.3
5.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2008.